

『구미시녹지시설관리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가로수 및 녹지시설은 푸른 녹음을 제공할 뿐 아니라 도로를 통한 선형녹지를 형성하고 도시경관조성, 공해방지 등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로수와 녹지시설의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로수 및 녹지시설 훼손에 대한 피해 변상금 규정 설정(제14,15조)
 - 피해 변상금의 강제징수 명문화
-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(제7조)
 - 물 주기, 병해충발생신고 등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권장.

4. 참고사항

- 근거법령
 - 도로법 제3조, 제64조, 제67조, 제78조
 - 도시공원법 제16조, 제18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녹지시설과 가로수의 식재 및 유지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, 녹지시설관리에 대한 시책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이며,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녹지시설의 관리 및 녹화 지원기준, 시민 참여, 위탁관리,
가로수 및 녹지시설 훼손에 대한 피해 변상금의 부과징수에
관한 사항 등이며,

○ 조례안의 내용이,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,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
것으로 판단됨.